



## 시공간\_민법총칙 전범위 테스트

1.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법원(法院)이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.<sup>1)</sup>
2. 종종 구성원의 지위를 남성에게만 인정하였던 종래 관습법의 효력은 헌법 등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.<sup>2)</sup>
3.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,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해야 한다.<sup>3)</sup>
4.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려면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며,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<sup>4)</sup>
5.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하여 그 사정변경이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이었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인으로 한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<sup>5)</sup>
6. 보증인이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, 신의칙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<sup>6)</sup>
7.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.<sup>7)</sup>
8.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, 판례는 원칙적으로 가해의사와 같은 주관적 요건을 요구한다.<sup>8)</sup>
9. 사람은 출생신고를 마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.<sup>9)</sup>

10.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,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될 수 없다.<sup>10)</sup>
11. 태아인 상태에서는 증여계약의 수증능력이 부정되며,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대리하여 수증행위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.<sup>11)</sup>
12.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스스로 주장·증명해야 한다.<sup>12)</sup>
13. 의사능력 없이 체결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, 의사능력이 없었던 자는 선의·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.<sup>13)</sup>
14.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, 제한능력자 측에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.<sup>14)</sup>
15. 법정대리인의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에 대해 미성년자가 처분행위를 한 경우, 미성년자는 그 처분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.<sup>15)</sup>
16.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도 않는다.<sup>16)</sup>
17.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는 있다.<sup>17)</sup>
18.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법률행위를 한 경우, 피성년후견인 측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<sup>18)</sup>

19.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자(子)와 친권자 자신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인 경우,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.<sup>19)</sup>

20.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,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되며,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.<sup>20)</sup>

21.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지만, 특정후견개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다.<sup>21)</sup>

22. 미성년후견인인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지만,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이 있어야만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.<sup>22)</sup>

23. 법원은 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.<sup>23)</sup>

24. 제한능력자와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되며, 단독행위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<sup>24)</sup>

25. 제한능력자와 거래행위를 한 악의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 등을 상대로 확정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<sup>25)</sup>

26. 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법정 위임관계에 있으며,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.<sup>26)</sup>

27. 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가 된다.<sup>27)</sup>

28. 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

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부동산을 매도한 후 나중에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매매는 유효하다.<sup>28)</sup>

29.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자의 실종선고가 있었던 시점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지만, 공법관계(선거권, 범죄)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<sup>29)</sup>

30. 실종자의 생환이 확인되더라도,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선고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이루어진 상속을 부정할 수 없다.<sup>30)</sup>

31. 법인의 불법행위책임(제35조)이 인정되는 경우,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·감독에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.<sup>31)</sup>

32.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, 그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(제35조)은 성립하지 아니한다.<sup>32)</sup>

33.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,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없다.<sup>33)</sup>

34. 비법인사단에게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며, 부동산에 대한 등기능력도 인정된다.<sup>34)</sup>

35.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.<sup>35)</sup>

36.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구 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.<sup>36)</sup>

37.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제자로 우선한다는 것은 관습법에 해당한다.<sup>37)</sup>

38. 농작물을 위법하게 경작·재배한 경우, 명인방법과 무관하게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이다.<sup>38)</sup>
39. 타인 소유의 물건은 중물이 될 수 없지만,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민법 제100조가 적용될 수 있다.<sup>39)</sup>
40. 주물·중물 이론은 권리 관계에도 유추 적용되지만, 중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해야 한다.<sup>40)</sup>
41.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에 해당한다.<sup>41)</sup>
42.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업으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.<sup>42)</sup>
43.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악의이더라도 제1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.<sup>43)</sup>
44.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제2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,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다.<sup>44)</sup>
45. 허위 진술의 대가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과 관계없이 무효이나, 사실대로 증언하는 조건으로 한 약정은 통상 용인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.<sup>45)</sup>
46.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장래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.<sup>46)</sup>
47.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.<sup>47)</sup>
48.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,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.<sup>48)</sup>
49. 도박자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중국적인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,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<sup>49)</sup>
50.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,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.<sup>50)</sup>
51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.<sup>51)</sup>
52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공박, 경솔 또는 무경험의 존재가 추정되므로,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현저한 불균형만 증명하면 된다.<sup>52)</sup>
53.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, 무효행위의 추인(제139조)은 부정되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(제138조)은 적용된다.<sup>53)</sup>
54.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나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.<sup>54)</sup>
55.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.<sup>55)</sup>
56.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<sup>56)</sup>
57.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.<sup>57)</sup>

58.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며,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이상 그는 선의에 해당한다.<sup>58)</sup>

59. 가장채권의 기존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<sup>59)</sup>

60.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도 착오에 해당할 수 있으나, 단순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.<sup>60)</sup>

61.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,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.<sup>61)</sup>

62.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.<sup>62)</sup>

63.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<sup>63)</sup>

64. 착오의 존재 및 중요 부분의 착오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가,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.<sup>64)</sup>

65.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,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표의자에게 불법행위책임(제750조)을 물을 수 없다.<sup>65)</sup>

66.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표의자가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·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·날인한 사안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,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적용할 수는 없다.<sup>66)</sup>

67.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

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<sup>67)</sup>

68.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.<sup>68)</sup>

69.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<sup>69)</sup>

70. 본인의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,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<sup>70)</sup>

71. 제3자의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사기로 인한 취소 없이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<sup>71)</sup>

72.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,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.<sup>72)</sup>

73.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 기망자인 매수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,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.<sup>73)</sup>

74. 본인 명의를 임의로 무단 사용한 경우, 원칙적으로 제126조 표현대리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.<sup>74)</sup>

75.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.<sup>75)</sup>

76.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<sup>76)</sup>

77.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·감독에 관한 과실책임을 부담한다.<sup>77)</sup>

78.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며 법정대리에도 제126조와 제129조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.<sup>78)</sup>

79.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.<sup>79)</sup>

80.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한 경우, 상대방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<sup>80)</sup>

81.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, 무권대리인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.<sup>81)</sup>

82. 무권대리인의 책임(제135조)은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며,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면 무권대리인은 본인과 동일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.<sup>82)</sup>

83.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,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잔부는 유효하다.<sup>83)</sup>

84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배제·잠탈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며,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도 확정적 유효가 되지 아니한다.<sup>84)</sup>

85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더라도 사기·강박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.<sup>85)</sup>

86.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.<sup>86)</sup>

87.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, 제한능력자는 선의·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, 받은 이익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.<sup>87)</sup>

88. 부침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만 무효가 된다.<sup>88)</sup>

89.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,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.<sup>89)</sup>

90.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측이 증명해야 하며, 조건 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한다.<sup>90)</sup>

91.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,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없다.<sup>91)</sup>

92. 방해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,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이다.<sup>92)</sup>

93.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불확정기한부에 해당한다.<sup>93)</sup>

94. 조건 및 기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나, 당사자가 특약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도 있다.<sup>94)</sup>

95. 기한이익 상실특약 중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약정 사유만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이 없이도 기한의 이익이 당연히 상실된다.<sup>95)</sup>

96.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부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,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.<sup>96)</sup>

97. 매매계약에 의한 등기청구권과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모두 채권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.<sup>97)</sup>

98. 매수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매매계약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.<sup>98)</sup>

99. 시효 완성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, 그때부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<sup>99)</sup>

100.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신탁자가 명의신탁 목적물을 점유·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<sup>100)</sup>

101. 채권자가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중인 경우,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하지만,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를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승인에 의해 시효가 중단된다.<sup>101)</sup>

102.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<sup>102)</sup>

103.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<sup>103)</sup>

104. 매수인의 매매대금에 대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진행된다.<sup>104)</sup>

105.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그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진행된다.<sup>105)</sup>

106.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채권 성립 당시부터 진행된다.<sup>106)</sup>

107.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계약체결시부터 진행된다.<sup>107)</sup>

108.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거래 종료일부터 한꺼번에 진행된다.<sup>108)</sup>

109. 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환자가 퇴원한 때부터 한꺼번에 진행된다.<sup>109)</sup>

110.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.<sup>110)</sup>

111.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<sup>111)</sup>

112. 소멸시효의 완성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, 채무자 등의 원용이 없는 한,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.<sup>112)</sup>

113.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.<sup>113)</sup>

114.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.<sup>114)</sup>

115.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<sup>115)</sup>

116.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판결 확정으로 10년으로 연장되어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종전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.<sup>116)</sup>

117.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<sup>117)</sup>

118.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한 것만으로는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<sup>118)</sup>

119.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 시점은 채무자인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이다.<sup>119)</sup>

120.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, 파산절차참가, 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,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하여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.<sup>120)</sup>

121. 가압류는 집행이 되면 가압류 신청한 때가 아니라 가압류 집행이 된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다.<sup>121)</sup>

122.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.<sup>122)</sup>

123. 채무의 일부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.<sup>123)</sup>

124.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직접 원용할 수 있다.<sup>124)</sup>

125.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.<sup>125)</sup>

126.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일부를 변제 등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.<sup>126)</sup>

127. 제척기간은 권리의 소멸에 있어 기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,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.<sup>127)</sup>

128. 채권양도의 통지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.<sup>128)</sup>

129.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약정하였다면,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.<sup>129)</sup>

130. 취소권뿐만 아니라 취소권 행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<sup>130)</sup>

정답

- 1) (정답 ×) 134 페이지
- 2) (정답 ○) 134 페이지
- 3) (정답 ×) 134 페이지
- 4) (정답 ○) 135 페이지
- 5) (정답 ○) 135 페이지
- 6) (정답 ×) 136 페이지
- 7) (정답 ×) 136 페이지
- 8) (정답 ○) 136 페이지
- 9) (정답 ×) 137 페이지
- 10) (정답 ×) 137 페이지
- 11) (정답 ○) 137 페이지
- 12) (정답 ○) 138 페이지
- 13) (정답 ×) 138 페이지
- 14) (정답 ×) 138 페이지
- 15) (정답 ○) 138 페이지
- 16) (정답 ×) 139 페이지
- 17) (정답 ×) 139 페이지
- 18) (정답 ×) 139-140 페이지
- 19) (정답 ○) 140 페이지
- 20) (정답 ○) 140 페이지
- 21) (정답 ×) 141 페이지
- 22) (정답 ×) 141 페이지
- 23) (정답 ×) 141 페이지
- 24) (정답 ○) 142 페이지
- 25) (정답 ×) 142 페이지
- 26) (정답 ×) 142 페이지
- 27) (정답 ○) 142 페이지
- 28) (정답 ○) 143 페이지
- 29) (정답 ×) 143-144 페이지
- 30) (정답 ○) 144 페이지
- 31) (정답 ×) 145 페이지
- 32) (정답 ○) 145 페이지
- 33) (정답 ×) 145 페이지
- 34) (정답 ○) 146 페이지
- 35) (정답 ×) 146 페이지
- 36) (정답 ×) 147 페이지
- 37) (정답 ×) 147 페이지
- 38) (정답 ○) 147 페이지
- 39) (정답 ○) 148 페이지
- 40) (정답 ○) 148 페이지
- 41) (정답 ×) 148 페이지
- 42) (정답 ○) 148 페이지
- 43) (정답 ○) 149 페이지
- 44) (정답 ○) 149 페이지
- 45) (정답 ○) 150 페이지
- 46) (정답 ×) 150 페이지
- 47) (정답 ○) 150 페이지
- 48) (정답 ○) 151 페이지
- 49) (정답 ×) 151 페이지
- 50) (정답 ○) 151 페이지
- 51) (정답 ×) 152 페이지
- 52) (정답 ×) 152 페이지
- 53) (정답 ○) 153 페이지
- 54) (정답 ○) 153 페이지
- 55) (정답 ×) 154 페이지
- 56) (정답 ×) 154 페이지
- 57) (정답 ○) 155 페이지
- 58) (정답 ○) 155 페이지
- 59) (정답 ○) 155 페이지
- 60) (정답 ○) 156 페이지
- 61) (정답 ×) 156 페이지
- 62) (정답 ○) 156 페이지
- 63) (정답 ○) 157 페이지
- 64) (정답 ○) 157 페이지
- 65) (정답 ○) 157 페이지
- 66) (정답 ×) 157 페이지
- 67) (정답 ○) 157 페이지
- 68) (정답 ○) 157 페이지
- 69) (정답 ○) 158 페이지
- 70) (정답 ×) 158 페이지
- 71) (정답 ×) 158 페이지

- 72) (정답 ×) 158 페이지  
73) (정답 ×) 159 페이지  
74) (정답 ○) 160 페이지  
75) (정답 ×) 160 페이지  
76) (정답 ○) 161 페이지  
77) (정답 ○) 161 페이지  
78) (정답 ○) 162 페이지  
79) (정답 ○) 162 페이지  
80) (정답 ○) 162 페이지  
81) (정답 ○) 163 페이지  
82) (정답 ○) 163 페이지  
83) (정답 ×) 163 페이지  
84) (정답 ○) 164 페이지  
85) (정답 ○) 164 페이지  
86) (정답 ×) 166 페이지  
87) (정답 ○) 166 페이지  
88) (정답 ×) 167 페이지  
89) (정답 ×) 167 페이지  
90) (정답 ○) 167 페이지  
91) (정답 ×) 167 페이지  
92) (정답 ×) 167 페이지  
93) (정답 ×) 167 페이지  
94) (정답 ×) 168 페이지  
95) (정답 ○) 168 페이지  
96) (정답 ×) 168 페이지  
97) (정답 ○) 168 페이지  
98) (정답 ○) 168 페이지  
99) (정답 ○) 169 페이지  
100) (정답 ×) 169 페이지  
101) (정답 ○) 169 페이지  
102) (정답 ×) 169 페이지  
103) (정답 ○) 170 페이지  
104) (정답 ×) 170 페이지  
105) (정답 ×) 170 페이지  
106) (정답 ○) 170 페이지  
107) (정답 ×) 170 페이지  
108) (정답 ×) 170 페이지  
109) (정답 ×) 171 페이지  
110) (정답 ×) 171 페이지  
111) (정답 ○) 171 페이지  
112) (정답 ○) 171 페이지  
113) (정답 ○) 172 페이지  
114) (정답 ○) 172 페이지  
115) (정답 ×) 172 페이지  
116) (정답 ○) 172 페이지  
117) (정답 ○) 173 페이지  
118) (정답 ○) 173 페이지  
119) (정답 ×) 173 페이지  
120) (정답 ○) 174 페이지  
121) (정답 ×) 177 페이지  
122) (정답 ○) 175 페이지  
123) (정답 ○) 176 페이지  
124) (정답 ×) 177 페이지  
125) (정답 ×) 178 페이지  
126) (정답 ×) 178 페이지  
127) (정답 ×) 179 페이지  
128) (정답 ×) 179 페이지  
129) (정답 ×) 179 페이지  
130) (정답 ×) 179 페이지